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록·보존 의무 등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5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록·보존 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	2
※ 참고자료	6
1. 동물원 관리 제도 현황	6
2. 전국 동물원 현황	7

I. 제안경위

2025년 3월 5일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록·보존 의무와 같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수족관의 개체 수 등 기록·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록·보존 의무 등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

개정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 관련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①·② (생략)	제3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삭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2조(과태료) ①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제20조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법 제20조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 등’의 사항을 기록할 의무와 해당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할 의무를 부여하면서¹⁾,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운영·관리 기록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2.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기록
4.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당 조항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가 보유동물 중 및 개체 수, 반입·반출 등을 거짓없이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여, 보유동물을 책임 있고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동물 복지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형벌인 벌금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것으로, 보유동물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 등에 대하여 벌금형을 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 제20조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벌금 500만원 규정을 과태료 5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례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등이 있으며³⁾,

3)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②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③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먹는물관리법**」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

정부 또한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⁴⁾’의 일환으로 동물원의 보유동물 개체수 기록 등을 20년간 보존하지 않을 경우 처해지던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할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1

기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2024.12.19.(관계부처 합동)

※ 참고자료

1. 동물원 관리 제도 현황

① 동물원·수족관 설립기준 강화

- (허가제 전환)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허가권자는 전문 검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 검토
 - 서식환경·전문인력 등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수족관 설립이 가능하며, 기존 동물원은 5년내 허가를 득하도록 유예

* 동물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시 동물관리계획 등

구분	기 준(등록기준)	개 정(허가기준)
서식환경 기준	< 신 설 >	● 주요 동물 사육기준 규정 * 세부기준은 허가업무지침에서 구체화
전문인력 기준	● 사육사 : 1~3명(40종 미만 1명, 40종~70종 2명, 70종 이상 3명) ● 수의사 : 1명(촉탁수의사 허용)	● 사육사 : 2~6명(70종 미만 2명(위험 동물 보유시 3명), 70종 이상 6명) ● 수의사 : 1~2명(위험동물 보유시 2명)
질병·안전 등 관리 계획	● 자체 수립 후 이행	● 허가 시 계획의 적절성 평가

- (전문검사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자문

* 수의사 취득후 동물원 5년이상 근무, 동물원에서 7년이상 종사, 관련 업무 10년이상 종사

② 동물원 현황조사 및 제재 강화

- (실태조사 및 시설검사) 환경부·해수부가 5년마다 시설 운영현황, 동물복지 등에 대해 실태조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 허가권자의 정기검사(매 5년) 및 수시검사(필요시) 실시 규정 마련
- (처벌기준 강화) 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조치명령 기준 구체화, 벌칙 및 과태료 강화 등 제도 이행력 확보

2. 전국 동물원 현황('23.12월말 기준)

□ 동물원 현황(총 127개소)

- (운영주체) 공영동물원 : 27개소, 민간동물원 : 100개소
- (시설형태) 실내동물원 : 60개소(공영 5, 민간 55)
- (규모*) 대형동물원 : 15개소, 중형동물원 : 36개소, 소형동물원 : 76개소

* 동물원 규모 : 대(10,000m² 이상), 중(1,000~10,000m²), 소(1,000m² 미만)

<운영 주체별·규모별 동물원 현황>

합계	공영 동물원	민간동물원(100)				규모별*			비 고
		야외방사장 유무		체험 여부					
		야외공간 확보	실내동물원	전시형	체험형	대	중	소	
127	27	45	55	44	56	15	36	76	* 실내동물원 수 : 12('16)→60('23)

* 공영동물원 27개소 중 야외공간 확보 22개소, 실내동물원 5개소

<지역별 동물원 현황 >

지자체명	합계	공영	민영
합계	127	27	100
서울특별시	5	1	4
부산광역시	6	1	5
대구광역시	4	1	3
인천광역시	7	1	6
광주광역시	3	1	2
대전광역시	4	1	3
울산광역시	4	1	3
강원특별자치도	10	1	9
경기도	29	1	28
충청북도	4	1	3
충청남도	6	2	4
전라북도	4	3	1
전라남도	11	4	7
경상북도	9	2	7
경상남도	8	4	4
제주특별자치도	9	1	8
세종특별자치시	4	1	3

※ 출처: 환경부